

#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874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   | 2004. 8. 5  | 고 성 군 수       |
| 나. 회 부 일 자 :       | 2004. 8. 5  |               |
| 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| 2004. 8. 17 | 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 |

### 2. 제안이유

- 2004. 6.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읍·면 기능전환 추진 관련 한시 기구를 자치조직권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기구로의 전환 운영에 앞서 주민지원과 한시기구 시한 연장을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읍·면 기능전환 한시기구(주민지원과) 존속기한을 2005년 6월30일 까지로 함.(안 부칙, 한시적 기구에 대한 경과조치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으며,
-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시군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하여 2004. 6. 30

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읍·면 기능전환 추진관련 한시기구를 자치조직 권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, 한시적인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기구로의 전환운영에 앞서 한시기구 시한연장에 따라 읍면기능전환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05. 6. 30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코자함은 늦은감이 있으나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**5. 질의 및 답변 : 없음**

**6. 토 론 : 없음**

**7. 심사결과**

○ 2004. 8.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